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05

발의연월일: 2021. 8. 19.

발 의 자 : 이수진(비) · 오영환 · 양정숙

박상혁 • 이규민 • 장경태

문진석 · 홍정민 · 김홍걸

노웅래 • 류호정 • 강민정

배진교 · 최혜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복지시설은 다양한 내·외부적 사정으로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 들이 일정기간 생활하고 이용하는 시설로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이용자에 대해 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가 관련 종사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의 금지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호 관련 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금지를 의무화하여 종사자의 안전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누구든지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 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누구든지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u>니 된다.</u>
<u> <신 설></u>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
	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